

화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 번 호	
-------------	--

제출년월일 : 1995. 5. 10.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의 이유

'94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 26 조의 2, 제 41 조, 제 175 조, 제 176 조

○. 지방세법 제 266 조 제 3 항, 제 266 조 제 4 항

3. 주요골자

가. 주민세(개인균등할)세율 변경(안 제15조 1항)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인상

나. 주민세(개인균등할)납기 변경(안 제16조)

현행 : 매년 7월 1일 기준 7. 16 ~ 7. 31에서

개정 : 매년 8월 1일 기준 8. 16 ~ 8. 31까지로 변경

다.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규정 명확화

현행: 납기한의 연장 규정이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등의 납부 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운영

개정:"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함

라.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

○ 법 제 266조 제4항 규정의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

○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함

화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순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용어"를 "정의"로 한다

제7조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 26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⑤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 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제목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를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로 하고 본문중 "탈락"을 삭제하며 "포탈"을 "면탈"로 한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균등할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1,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법 제184조의3"을 "법 제184조"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지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 관리인을 변경 한 경우 및 신고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중 본문과 제 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한다

제28조(신고의무) 법 제 196 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제31조중 " 법 제202조 제1항 " 을 " 법 제9조의 2 "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 제32조 " 를 " 제31조 "로 한다.

제3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당:30,000원

제48조중 " 보존하여야 한다 " 를 "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9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를 "법 234조의 12"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 제목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본문중"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4조 제1항중 "법 제238조의 2"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하고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하며 "관할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56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중 제목 "납세고지서 및 부과징수"를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로 한다.

제61조를 삭제 한다.

제62조 제2항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63조중 "비과세 또는 "을 "비과세"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u>지방세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때는 <u>지방세법시행규칙</u>(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p> <p>-----기한의 -----</p> <p>-----기한이 만료되기전 -----</p> <p>② -----기한 -----</p> <p>-----기한 -----</p> <p>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p> <p>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월-----</p> <p>-----연장할 수 있다.</p> <p>③ -----기한의 -----</p> <p>-----기한 -----</p> <p>-----증명할 수 있는</p> <p>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군수에</p> <p>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p> <p>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 략)</p> <p>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 부터 정수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신고납부 기한의 ----- ---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 --- 적용-----.</p>										
<p>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정수금의 처리) 탈 락,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제11조(탈루된 정수금의 처리) 누락, ----- ----- 면탈 ----- ----- -----</p>										
<p>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인 : 800원</p> <p>2. 법인</p>	<p>제15조(세율) ① ----- ----- 1. 개인 : 1,000원 2. 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 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td> <td style="padding: 5px;">(50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 5px;">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으로서 군 내의 종업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 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td> <td style="padding: 5px;"></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 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0,000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으로서 군 내의 종업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 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세 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과세기준일 ----- ----- -----) -----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td> <td style="padding: 5px;">50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액	----- (과세기준일 ----- ----- -----) -----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500,000원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 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0,000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으로서 군 내의 종업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 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구 분	세 액										
----- (과세기준일 ----- ----- -----) -----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500,000원										

현 행		개 정 안
		<p>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p> <p>-----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p> <p>-----</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 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 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p> <p>-----</p>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p>	<p>(350,000원)</p> <p>-----</p> <p>-----</p> <p>-----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p> <p>(200,000원)</p> <p>-----</p> <p>-----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p> <p>-----</p> <p>-----</p> <p>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p> <p>-----</p> <p>-----</p> <p>-----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p>	<p>350,000원</p> <p>-----</p> <p>-----</p> <p>-----</p> <p>200,000원</p> <p>-----</p> <p>-----</p> <p>-----</p> <p>100,000원</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군내의 종업원수 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 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 하인 법인과 ----- ----- ----- 과세기준일 현 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 업원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법인
기타법인	(50,0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납기등)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 는 매년 7월16일 부터 7월31까지로 하 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 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 를 제외 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6조 < 삭제 >
제17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 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 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 세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 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삭 제>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 톤수 또는 적재량	5. ----- -----
7. 항공기의 종류, 이륙 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6. ----- -----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 -----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② 법 제 26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 사항에 변동이 생긴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 ----- ----- ----- ----- -----하며 ----- ----- ----- 같다.

현 행	개 정 안
<p>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 1 항 제2호 제3목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 -----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지역" ----- .</p>
<p>제24조(증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 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 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 < 삭제 ></p>
<p>1.증기를 취득한 때 2.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수없게 된때 3.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비과세 증기가 과세증기로 된 때 5.과세 증기가 비과세증기로 된 때</p>	
<p>제28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p>	<p>제28조(신고의무) ----- ----- ---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 또는 이전 등록등을 필한후 ----- ----- .</p>
<p>1.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p>	<p>1.----- 성명 또는</p>

현 행	개 정 안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2. ~ 4. (생 략) 5. 배기량 6.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 법 제 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 8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 법 제 9조의2 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32조(종군자 등의 감면 신청) ① 영 제 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 고자 하는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 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을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	제32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제33조(감면 결정 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시행규칙 제 8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p> <p>1. 일당: 5,000원</p> <p>2. (생 략)</p>	<p>제33조(감면 결정 통지) -----</p> <p>--제31조의 -----</p> <p>-----</p> <p>-----</p> <p>-----</p> <p>제3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p> <p>-----</p> <p>-----</p> <p>1. 일당: 30,000원</p> <p>2. (현행과 같음)</p>
<p>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의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제48조(기장의무) -----</p> <p>-----</p> <p>----- 5년간</p> <p>보존하여야 한다.</p>
<p>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p> <p>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 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p> <p>① 법 제266조의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토지"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6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p>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p>① (생 략)</p> <p>②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 <u>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u> <u>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u> <u>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u> <u>또는 감면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u> <u>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u>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 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u>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u> <u>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u> <u>타 비과세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u> <u>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u> <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제5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	<p>----- <u>비과세</u> -----</p> <p>-----</p> <p>-----</p> <p>-----</p> <p>-----</p> <p>-----</p>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도시 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 계획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

현 행	개 정 안
<p>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도시계획 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p> <p>다만 법 제 10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 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p>
<p>1. ~ 3. (생 략)</p> <p>제58조(납세고지서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 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 3항의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p>
<p>제61조(납기등)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제61조< 삭제 ></p>

현 행	개 정 안
<p>제6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u>10일</u>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7. (생 략)</p>	<p>제62조(신고의무) ① ----- ----- ----- ----- ----- ----- ----- ----- ----- ----- ----- ----- ----- ----- ----- ----- ----- 30일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6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u>비과세 또는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① ~ ⑥ (생 략)</p>	<p>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 ----- <u>비과세</u> ----- ----- ----- ----- -----</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 제 1항 <u>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u></p> <p>1.1읍:화순읍 2.12면: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p>	<p>제64조 < 삭 제 ></p>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hr/>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p> <hr/> <p>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 <hr/>

검토보고서

□ 조례명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 내용

- ①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액인상 (안 제 15조 제 1항)

- 현행 800원 → 1,000원

- ② 주민세 (균등할) 과세기준일 및 납기변경 (안 제 16조, 지방세법 제 175조)

- 현행 : 매년 7월 1일 기준 7. 16 ~ 7. 31

- 개정 : 매년 8월 1일 기준 8. 16 ~ 8. 31

- ③ 농협중앙회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종합토지세
· 재산세 경감율 하향조정 및 신설 (안 제 19조, 제 49조)

-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75/100 → 50/100 하향조정

-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 50/100 신설

□ 개정 사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 9조의 2, 제 175 ~ 176조 제 1항 제 266조
제 3항 및 동법시행령이 '94. 12. 22 개정 '95. 1.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내용을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

□ 검토결과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사전 입법예고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선행절차를
마쳤고,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개정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행 조례의 내용
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개정코자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